



: 2018-03-07

## 서울고등법원

### 제5민사부

### 판결

사 건 2017나2014466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티씨 아이엔씨(PTC In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8. 1. 2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8.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사용료를 곱한 금액'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많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별 모듈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모듈 88개가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 6개를 불법 복제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그 중 정확한 제품명이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의 가격을 산정하면 595,835,100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3,575,010,600원(= 595,835,100원 × 6(복제수량))이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 일부청구로서 900,000,000원(= 해당 청구액 150,000,000원 × 6(복제수량))의 배상을 구한다(원고의 2017. 4. 18.자 항소이유서 참조).

### 나. 판단

####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산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이쓰리 피에스(이하 '이쓰리피에스'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6대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88개 모듈 중 정확한 제품명이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 중 Creo 버전에만 있는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 또는 37개 모듈을 구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단지 2015. 8. 19.경 Creo Essentials Team 모듈 외 8개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 Creo 버전이 1억 5,000만 원에 판매된 자료만 제출되어 있는 저(갑 16호증), 각 모듈별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적인 구매절차로 구입한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 소프트웨어(S/W)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되는 점(제1심 법원의 이쓰리피에스에 대한 2016. 7. 27.자 사실조회 결과), 뿐만 아니라 위 가격은 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으로 이를 곧바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7개 모듈의 가격 595,835,100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7, 8, 16, 18, 19호증, 을 20 내지 22,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그 영상, 제1심 법원의 패라메트릭코리아, 이쓰리피에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 1)항에서 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즉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은 6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설계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

② 피고 회사는 진공성형 방법으로 포장완충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피고 회사의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당심 증인 C(피고 회사의 전 직원)은 "제품이 필요한 고객(LG 이노텍 등)이 제품의뢰를 하면 그 취지에 따라 도면을 설계·작성한다. 고객에게 그 도면을 보여주고, 고객이 이를 승인하면 승인된 도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캠퍼일로 금형을 제작한다. 제작된 금형을 가지고 생산현장에 보내면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C은 "피고 회사의 직원 중 4~5명이 제품 및 금형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다. 설계하는 직원은 의뢰한 내용에 맞게 트레이(제품)를 설계하는 것이고 가공하는 사람은 설계된 3차원 도면을 토대로 캠퍼일을 내려서 실제 가공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수정사항 또는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재가공하여 현장에 넘겨주는 그런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이쓰리피에스는 피고 회사의 제품 사진을 분석하여 '피고 회사는 설계뿐만 아니라 금형, 해석 업무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개(기본



설계모듈 3개, 금형 설계모듈 2개, 금형 가공모듈 2~4개, 사출성형 모듈 1개, 해석 모듈 3개)<sup>1)</sup>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제1심 법원의 이쓰리피에스에 대한 2016. 7. 27.자 사실조회 결과). C은 "증인이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는 금형 제작 및 가공에는 VISI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제품 및 금형 설계작업을 할 때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출성형 모듈은 사용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서 수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수축률을 반영한 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원고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위 37개 모듈 전부가 아닌 별지 모듈 내역 순번 1 내지 8 기재 모듈(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8 모듈'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 모듈'이라고 한다)이 피고 회사의 제품(트레이) 및 금형의 설계, 해석업무 수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모듈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원고의 2017. 8. 9. 기술시연자료, 원고의 2017. 9. 15.자 준비서면 각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트레이), 금형의 설계 및 해석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제1 내지 8 모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제1 내지 6, 8 모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reo 버전의 모듈 이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기본 설계모듈: Creo parametric, AAX, FMX

금형 설계모듈: TDO, EMX

금형 가공모듈: Creo Primitives and Multi-Surfaces Milling Extension, Creo Production Machining Extension, Creo Complete Machining Extension, Creo Computer Aided Verification Extension

사출성형 모듈: MAX

해석 모듈: Creo Advanced Simulation Extension, BMX, Creo Fatigue Advisor Extension



㉠ 이 사건 제1, 2 모듈의 경우 제품의 기본 설계를 위한 모듈이고 당사자 사이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듈임은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3, 4 모듈의 경우 실제 시제품(금형)을 만들지 않고도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상정하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 금형의 실물 강도, 신뢰성, 열, 압력, 피로도 등을 확인하는 모듈로, 이를 통하여 개발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설계결함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 이 사건 제5 모듈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로, 이를 통하여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최적의 설계(안)를 도출하고 제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무게 또는 두께 등을 줄이는 최적의 설계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 이 사건 제6 모듈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 수축률 등을 반영한 금형의 설계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금형을 설계하는 모듈이다. 이 사건 제8 모듈의 경우 실제 생산된 제품이 설계도면대로 제작된 것인지 측정하는 모듈로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다만, 이 사건 제7 모듈의 경우 금형의 제작 및 가공에 사용되는 모듈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위해서 VIS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및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의 판



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은 제외하여야 한다.

⑥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제1 내지 6, 8 모듈의 판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약 100,000,000원에 이른다(별지 모듈 내역 기재 참조).

#### 다.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여러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FlexNet License 모델 등에 따른 라이선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갑 9 내지 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부족하다. 더구나 주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들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산재하여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웹하드 등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방법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 프로그램 공유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2)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개인 사용자들 간(peer to peer)에 서로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들은 별도의 사용자 인증이나 결제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무료로 각종 프로그램,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2.부터 2018. 1. 25.(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김용하
	판사	이상호



별지

### 모듈 내역

순 번	모듈 이름	기능	가격(단위 원)	
			S/W	Maintenance
1	Pro/ENGINEER Foundation XE	기본 설계 툴	15,136,000	2,062,600
2	Pro/ENGINEER      Advanced Assembly Extension(AAX)	기본 설계시, 설계 파일의 데이터 정 보 공유 및 어셈블리 정의	11,528,000	1,361,200
3	Pro/ENGINEER      Advanced Mechanica Option	일반적인 해석 툴로서, 설계 파일을 이용해 미리 실물의 강도, 신뢰성, 열, 압력 등을 확인	28,380,000	2,475,000
4	Pro/ENGINEER      Fatigue Advisor Option	일반적인 해석 툴로서, 반복되는 작 업시 해당 대상물에 가해지는 피로 해석	8,928,400	1,237,500
5	Pro/ENGINEER Behavioral Modeling Extension(BMX)	여러 가지 조건 중 사용자가 원하는 최상의 조건으로 대상을 설계하는 최 적화 툴	8,756,000	1,237,500
6	Pro/ENGINEER Tool Design Option(TDO)	일반적인 금형 설계 기능	12,507,000	1,732,500
7	Pro/ENGINEER Production Machining Option	설계파일을 이용해 실제로 금형 등을 가공할 때, 설계 파일의 디지털 정보 를 가공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좌표 x, y, z축으로 변환하는 기능	12,503,400	1,732,500
8	Pro/ENGINEER Computer Aided Verification Option	실제로 생산된 제품이 설계도면대로 제작된 것인지를 측정하는, 품질보증 기능	17,865,900	2,475,000